

3-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

4 지원 대상 및 범위

- 연령 : 만 65세 이상
- 수술비 지원범위 :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(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)
 -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
 - * 한쪽 무릎 기준임
 - *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,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,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제외
 - *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불가

5. 신청절차 및 방법

- 신청·지원 절차
 - (지원자 - 신청) 지원하려는 자가 사군 구 보건소에 신청
 - ※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,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
 - (보건소 - 대상자 추천)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, 사회보장정보시스템,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충족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'노인의료나눔 재단(이하 '재단'이라 함)으로 적격자 추천
 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정보주체로부터 [서식3]의 사전동의서를 수령
 - (재단 - 대상자 통보)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
 - *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
 - (수술비 청구-대상자) 대상자는 재단으

4 지원 대상 및 범위

- 연령 : 만 60세 이상
- 수술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 -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
 - * (지원제외)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,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, 통원치료비

5. 신청절차 및 방법 등

- 신청·지원 절차
 - (지원자 - 신청) 지원하려는 자가 사군 구 보건소에 신청
 - ※ 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,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
 - (보건소 - 대상자 추천 및 통보)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'노인의료나눔 재단(이하 '재단'이라 함)으로 적격자 추천,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
 - ※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
 - (재단-대상자 통보)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하고 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
 - *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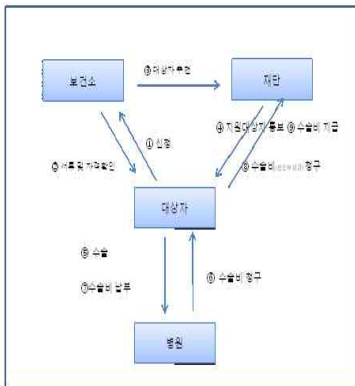
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

*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[서식4호] 다운로드하여 작성

- (재단 - 수술비 지원)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은행계좌로 송금

* 단,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

[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실시체계]



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

- (재단-수술비 지원)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[서식3],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,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

*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[서식 3] 다운로드하여 작성

* 단,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

[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실시체계]



<신설>

■ 제도안내 및 홍보

-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관할 보건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

7. 교육 및 홍보

■ 사업 홍보

- 시·도, 시·군·구(보건소)는 수술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
 - 수술비 지원 사업의 내용, 관절건강의 필요성 등을 미디어 매체, 공익광고, 홈페이지,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

7. 교육 및 홍보

■ 사업 홍보

- 시·도, 시·군·구(보건소) 및 시·군·구(보건소)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수술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
 - 수술비 지원 사업의 내용, 관절건강의 필요성 등을 미디어 매체, 공익광고, 홈페이지,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